

# 기후변화협약 대응전략에 대한 산업체의 견해

성준용(LG환경 · 안전연구원 원장)

## 1. 기후변화협약의 의미

1972년 로마클럽의 보고서인 「성장의 한계」는 자연자원의 고갈로 인해 기존의 성장방식은 조만간 불리적 한계에 부닥치게 될 것이며, 파국적인 결과를 초래하기 않기 위해 인류 전체가 당장 행동에 나서야 할 때라고 경고했다. 그로부터 20년이 지난 후 인류는 기후변화협약이라고 하는 전대미문의 새로운 국제협약을 채택했다. 하나뿐인 지구의 보존을 위해 인류 전체가 행동에 나서기 시작한 것이다.

20년 전과 달라진 것이 있다면, 자연자원의 고갈이 아니라 지구온난화라고 하는 새로운 현상이 주요 이슈가 되었다는 점이다.

1992년 리우에서 기후변화협약이 채택된 지도 10년이 되어가고 있다. 지난 10년 동안 지구상에는 지구환경문제와 기후변화협약이라는 소용돌이가 몰아닥쳤다. 산업혁명 이후 지금까지 지속되어 온 화석연료에 기반한 경제성장이 초래한 결과에 대한 반성 속에서, 기존의 성장패턴에 대한 변화의 필요성이 강력히 요구되고 있다. 현재 우리나라도 그러한 소용돌이 속에 얹혀 들어가고 있다.

기후변화협약은 환경적 측면과 경제적 측면이라는 두 가지 얼굴을 가지고 있다. 2001년에 나온 IPCC의 제3차

보고서에 따르면, 과거 50년 동안 관측된 온난화의 대부분은 인간활동에 의해 야기된 것이며, 이러한 인간활동으로 인해 20세기에 지구의 평균기온은 약 0.6도 상승했으며, 2100년에는 1990년 대비 최고 5.8도 상승할 것이라고 한다. 지구온난화가 진행되면 극지방의 얼음이 녹아 해수면이 상승하고 육지 면적이 감소되어 경작지·주거지의 감소를 초래하며, 기후체계가 혼란해져 기상이변이 심화되고 이에 따른 막대한 피해가 뒤따르게 된다.

이러한 환경적 측면과 더불어, 하나의 국제협약으로서 기후변화협약은 각국의 이해관계가 얹혀 진행되고 있다. 온실가스의 배출은 화석연료의 사용과 밀접한 상관관계를 가지고 있으며, 화석연료의 사용 규제는 국가별, 산업별 나아가 기업별로 상이한 효과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기후변화협약은 경제적 문제와 불가분의 관계에 있다.

사실 우리나라의 입장에 보면, 기후변화 자체의 드실은 매우 불확실하다. 경우에 따라, 지구온난화가 진행되는 것이 우리나라에 더 유리할 수도 있다. 하지만 기후변화협약에서 지구온난화로 인한 손실이 이득보다 큰 국가만이 이해당사자가 되는 것은 아니다. 우리의 드실 여부와는 무관하게, 기후변화협약은 우리나라를 포함한 전세계를 휩쓸고 있다. 따라서 기후변화협약이 우리에게 갖는 중요한 의미

도 지구환경의 변화라는 환경적 측면이 아니라 국제협약이라는 경제적(또는 정치적) 측면에 있다.

중요한 경제적 이해관계가 얹혀 있기 때문에, 지구환경의 보전이라는 대의명분에도 불구하고 기후변화협약이 원활하게만 진행되어 온 것은 아니다. 하지만 1997년 제3차 당사국총회에서 교토의정서가 채택되면서 선진국의 온실가스 의무감축 일정에 대한 합의가 이루어졌다. 제6차 당사국회의 속개회의에서 교토의정서의 이행을 위한 주요 쟁점들에 대한 기본적인 합의가 이루어지고 제7차 당사국총회에서 그러한 합의가 더 구체화됨에 따라, 기후변화협약은 점점 더 강하게 우리에게 다가오고 있다.

## 2. 기후변화협약과 한국경제

우리나라는 1999년 기준으로 경제규모 및 에너지소비량은 세계 10위, 온실가스 배출은 세계 11위, 그리고 석유소비는 세계6위(수입량은 세계 3위)로 세계적 차원에서 양적인 경제대국에 속한다. 우리나라의 경제성장은 에너지 소비량 증가와 밀접한 관계가 있었다. 1990년~1999년 사이 GDP는 연평균 5.8%씩 증가하였는데, 같은 기간 동안 에너지소비량은 연평균 7.7%씩 증가하였다. 1인당 에너지소비량은 1999년에 3.87TOE로 동년 일본의 4.08TOE에 근접하고 있다.

에너지소비량의 증가는 온실가스 배출량의 증가를 의미한다. 1990년~1999년 사이 1인당 온실가스 배출량도 연평균 5%의 증가율을 보였다. 그나마 이러한 수치는 1990년대 말의 금융위기로 인한 생산규모 축소로 인해 일정 부분 저평가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즉, 1990년부터 금융위기 직전인 1997년 사이의 온실가스 배출량 증가율은 7%를 넘는다. 더욱이 1990년 이후의 철강산업이나 석유화학산업 같은 에너지 다소비업종의 비중의 증가로 인해, 단위 GDP당 온실가스 배출량은 1990년대에 더욱 악화되었다.

우리나라의 온실가스 배출량의 대부분은 에너지소비에

의한 것으로, 에너지소비에 의한 온실가스 배출 비중이 총 배출량의 80%를 넘고 있다. 1990년대 에너지부문의 온실가스 배출량 증가율은 전체 평균 증가율을 상회하여, 1990년대 초에 비해 1990년대 말에 에너지부문의 온실가스 배출 비중이 더욱 높아졌다.

이러한 상황에서 선진국과 같은 온실가스 저감 목표를 받게 된다면 에너지 사용 규제는 필연적이 될 것이다. 이는 에너지집약형 산업의 비중이 높은 우리나라로서는 경제발전에 심각한 장애요인이 생기는 것을 의미한다. 만일 온실가스 의무감축 이행시기가 예상보다 빨리 오거나 아니면 과중한 감축 목표치가 부여된다면, 이는 1997년의 금융위기보다 더 심각한 위기를 초래할 수도 있다.

## 3. 기후변화협약에 대한 산업계의 입장과 대처방안

전세계적으로 기후변화협약에 대한 논의가 구체화되면서 1997년 12월에 교토의정서가 채택되었지만, 우리나라는 정부나 산업계 모두 그에 대한 실질적이고 효과적인 대책을 마련하지는 못했다. 이는 무엇보다도 1998년에 닥친 외환위기로 인해 당장 발등에 떨어진 불을 끄느라 여유가 없었기 때문이다. 이로 인해 정부도 기후변화협약과 교토의정서가 가져올 파장에 대해 안이하게 대처했을 뿐만 아니라, 산업계의 경우에도 개별 사업장 단위에서 에너지 절감을 위한 노력을 하기는 했지만 기후변화협약에 대한 공동의 대응안을 마련하려는 노력을 하지는 못했다.

외환위기로 인한 국가적 위기가 어느 정도 극복되고 기후변화협약이 구체화되면서, 산업계는 기후변화협약에 대한 산업계의 입장을 정리할 필요성을 인식하고 2001년 1월에 대한 상의 산업계 기후변화협약 대책반을 구성하였다.

동 대책반은 2001년 7월 10일에 기후변화협약에 대한 산업계의 기본 입장을 표명한 바 있다. 거기서 제시된 기후변화협약에 대한 산업계의 기본원칙('2C' 원칙)은 두 가지이다. 하나는 산업계가 환경보전과 지속가능한 발전

에 대한 사회적 책임을 깊이 인식하고 기후변화를 방지하기 위한 범세계적 노력을 지지하고 동참코자 한다고 하는 '공동의 책임 분담 인식'(Common Burden Sharing)이며, 다른 하나는 개도국인 우리나라의 경우 산업경쟁력을 유지해야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하는 '산업경쟁력의 충분한 고려'(Competitiveness)이다.

이러한 두 가지 원칙에 입각해서 기후변화협약에 대한 산업계의 기본 입장이 다음과 같은 네 가지로 제시되었다.

1. 한국의 온실가스 배출 의무부담 문제는 국내 산업의 경쟁력 문제와 나아가 국내 경제에 끼칠 수 있는 지대한 영향을 고려할 때 신중한 검토가 요구된다.

2. 기후변화협상 결과는 특히 국내 산업계에 직접적인 영향을 줄 것으로 기후변화협약에 대한 정부의 협상 전략은 산업계의 입장을 충분히 반영하는 것이 필요하며, 산업계는 향후 기후변화협상에 대한 산업계 입장을 적극 개진할 것이다.

3. 산업계는 이러한 온실가스 배출 저감의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지구온난화 방지와 에너지 절감의 필요성을 깊이 인식하고 향후 정부, 소비자, NGO 등 각계와의 동반자적 협력관계를 강화하면서 온실가스 배출 감축을 위한 자발적 노력을 배가할 것이다. 이러한 노력은 에너지 효율 향상과 소비절감, 기후변화협약에 대한 국제사회의 논의 동향에 대한 심층 분석, 정책 수행에 필요한 통계자료 구축, 기술 개발, 시범 프로젝트의 참여 등을 통해 이루어질 것이다.

4. 이와 같은 산업계의 노력이 보다 효과적이기 위해서는 정책당국으로부터의 다양한 인센티브와 정보의 상호교환이 요청된다.

그 후 기후변화협약 제6차 당사국총회 속개회의에서 교

토 의정서 이행 주요 이슈에 대한 정치적 합의('Bonn Agreement')가 이루어짐에 따라, 제7차 당사국총회 이후 교토의정서 비준과 개도국 감축의무 참여방안에 대한 논의가 본격화될 것으로 예상하고, 자발적 협약, 의무감축, 배출권 거래, CDM, 탄소흡수원, 탄소세 등과 같은 주요 이슈에 대한 산업계의 입장을 표명한 바 있다.

이하에서는 최근의 당사국총회의 논의 결과를 고려하여, 몇 가지 주요 쟁점들이 갖는 의미와 그에 대한 산업계의견 해를 제시하고자 한다<sup>1)</sup>.

### 1) 의무감축 일정

우리나라 정부는 1998년 4월 국무총리를 위원장으로 하는 민관합동의 기후변화협약 법정부대책기구를 설치하였다. 동 기구는 1998년 6월에 제3차 공약기간(2018년 이후) 이후부터 자발적 온실가스 감축의무 부담을 천명한 바 있다. 그리고 의무부담의 전제조건으로, ①우리나라의 배출한도는 성장잠재력을 지속시킬 수 있도록 배출량의 증가 속도를 더디게 하는 수준이어야 하고, ②배출한도 설정의 기준연도를 우리가 정해야 하며, ③우리나라의 에너지 다소비형 산업구조를 고려하여 부문별 한도 또는 에너지 효율성 목표의 설정 등의 방식도 허용해야 한다는 것을 제시했다. 그리고 1999년 10월에 개최된 제5차 당사국총회에서 환경부 장관은 자발적·비구속적 조건 하에서 온실가스 감축에 참여할 수 있다는 의사를 표명하였다.

2001년 3월 미국이 교토의정서 탈퇴를 선언하기는 했지만, 2001년 7월에 개최된 제6차 속개회의에서 교토의정서의 이행을 위한 골격에 대한 대체적인 합의가 이루어졌다. 그리고 제7차 당사국회의에서 의무준수체제의 세부사항에 대한 합의가 이루어졌고, 교토메카니즘의 이행방안과 탄소흡수원에 대한 논란이 어느 정도 정리되었기에, 앞으로는 개도국의 의무감축 일정 문제가 기후변화협약에서 가장 중요한 정치적 쟁점이 될 것이다.

1) 물론 이하에서 제시하는 견해는 산업계 전체의 공식 입장이 아니라 필자 의 주관적인 견해가 반영된 것이다.

향후 개도국의 의무감축 문제가 논의될 경우 우리나라가 1순위 대상국이 될 것이다. 제7차 당사국총회에서 발표된 국제 에너지기구의 국가별 온실가스 배출량 보고서에 따르면, 1999년 기준으로 우리나라는 연간 4.1억t의 CO<sub>2</sub> 배출하여 미국, 중국, 러시아, 일본, 인도, 독일 등에 이어 세계 10위를 차지했다. 더욱이 지난 10년간의 온실가스 배출량이 연평균 8%씩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으며,<sup>2)</sup> 앞으로 10년후에는 연간 6억t을 배출하여 세계 7위의 온실가스 배출국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한다. 따라서 우리나라가 개도국 의무감축 논의에서 커다란 압력을 받을 수밖에 없다. 1999년 10월 제5차 당사국총회에서 아르헨티나가 자발적 의무부담을 표명한 점, 미국이 교토의정서를 탈퇴한 명분이 개도국의 참여 문제였다는 점, EU가 제2차 공약기간(2013년~2017년) 동안 개도국의 의무감축 참여를 요구한다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우리나라의 의무감축 이행시기는 제2차 공약기간이 될 가능성이 매우 높아졌다.

그 만큼 기후변화협약에 대한 구체적인 대책 마련도 시급해진 것이다.

선진국 대 개도국이라는 큰 틀 속에서 벌어지고 있는 기후변화협약이라는 국제적 논의 구도에서, 우리나라는 매우 불리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다. 우리나라는 스위스, 멕시코 등과 더불어 환경협력그룹(Environmental Integrity Group, EIG)을 구성하여 기후변화협약에서 발언권을 강화하려고 하고 있지만, 실제로 우리나라의 입장이 그대로 받아들여지기는 쉽지 않을 것이다.

에너지경제연구원의 시나리오 분석에 의하면<sup>3)</sup>, 우리나라가 의무부담을 받을 경우가 의무부담을 받지 않을 경우에 비해 경제적 이득이 축소될 것으로 예측되고 있다. 하지만 우리나라의 의무감축 일정 문제가 핵심적인 쟁점으로 부각되고 있는 상황에서 의무감축 일정 문제를 고립적으로

만 고려해서는 곤란할 것이다. 일본, 러시아 등은 의무감축 이행에 대한 반대급부로 흡수원(Sink)에 대한 인정이라는 양보를 얻어냈다. 마찬가지로 제2차 공약기간에 우리나라의 의무감축이 불가피해진다면 그에 대한 반대급부를 얻어낼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할 것이다. 예를 들어, 우리나라도 흡수원(Sink)에 대한 인정을 받거나 또는 기업의 조기 온실가스 감축분이 크레디트로 인정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

요컨대, 우리나라의 의무감축 이행시기 문제는 국내적인 요인보다는 국제적인 역관계에 더 크게 의존하기 때문에, 의무감축 일정을 늦추려는 노력과 더불어 향후에는 의무감축 이행에 대한 반대급부를 얻어내려는 노력에 좀더 비중을 두어야 할 것이다. 예컨대, 아르헨티나가 제1차 공약기간에 참여하는 것의 조건으로 GDP에 연동된 온실가스 배출목표 수준의 설정, 1997년을 기준 연도로 설정, 개도국의 지위를 유지한 상태에서 교토메카니즘에 참여하는 것 등을 요구한 예에서와 같이, 우리 경제에 미치는 급격한 파장을 최대한 줄일 수 있는 참여방식을 찾아내고 그것을 국제사회에서 관철시킬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할 것이다.

## 2) 교토메카니즘(Kyoto Mechanism)

교토메카니즘이란 공동이행제도(Joint Implementation, JI), 청정개발체제(Clean Development Mechanism, CDM), 배출권 거래제(Emission Trading, ET)를 말한다. 공동이행제도(교토의정서 제6조)는 선진국인 A국이 선진국인 B국에 투자하여 발생된 온실가스 감축분의 일정분을 A국의 배출저감실적으로 인정하는 제도를 말하고, 청정개발체제(교토의정서 제12조)는 선진국인 A국이 개도국인 B국에 투자하여 발생된 온실가스 배출 감축분을 자국의 감축 실적에 반영하고 사업수익의 일정 부분을 개도국 재정지원에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를 말하며, 배출

2) 참고로 1990년부터 1998년 사이의 CO<sub>2</sub> 증가율은 OECD 평균 1.1%, 미국 1.4%, 일본 0.9%, 중국 2.4%, 멕시코 2.3%이다.

3) 임재규·강윤영, 『기후변화협약의 국내 산업구조 및 국제 경쟁력 파급효과』, 2000, 에너지경제연구원.

권 거래제(교토의정서 제17조)는 온실가스 감축의무가 있는 국가에 배출쿼터를 부여한 후 동 국가간에 배출쿼터의 거래를 허용하는 제도를 말한다.

교토메카니즘은 온실가스 감축을 비용효과적으로 달성하는 방안으로 인식되고 있다. 예를 들어, 미국의 경우 국내에서만 감축의무를 이행하는 경우 저감비용이 530억불 소요되나, Annex I 국가간 배출권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 저감비용이 270억불로 줄어들며, 개도국이 참가하는 경우에는 120억불로 줄어들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하지만 우리나라의 입장에서 볼 때 문제가 되는 것은 교토메카니즘이 제기된 맥락이 선진국(Annex I 국가)의 감축비용 저감을 위해 고안된 수단이라는 점이다. 공동이행 제도나 배출권 거래제는 선진국들 사이의 거래에 관련되기 때문에, 의무감축 대상국이 아닌 우리나라와 직접 관련되지는 않는다. 청정개발체제의 경우에도, 교토의정서의 조항에 따르자면 원칙적으로는 선진국이 개도국에 투자하여 발생한 온실가스 감축분만을 인정하는 것이다. 요컨대 교토메카니즘은 감축비용의 저감을 위한 수단인 만큼 의무감축 대상이 아닌 국가의 입장은 그다지 고려되지 않은 것이다.

교토메카니즘의 활용과 관련해서 우리나라에서 많은 관심의 대상이 되고 있는 것이 개도국간의 CDM인 unilateral CDM이다. 우리나라는 제4차 당사국총회 때부터 unilateral CDM의 허용과 개도국의 CERs(Certified Emissions Reductions) 보유·이전의 허용을 주장해왔다. 산업계 역시 최근에 "해외 투자시 CERs를 인정하고 국내 투자에 대해서도 기준선(baseline) 이상의 온실가스 감축은 선진국과 동일 조건의 CERs를 받도록 해야 하며", 동시에 "non-Annex I 국가에도 투자하여 CERs를 인정받는 개도국간 CDM은 산업계에서 적극 찬성"한다는 입장을 표명한 바 있다. 이번 제7차 당사국총회에서도 우리나라의 환경부장관은 "개도국의 능동적 참여와 기술개발을 촉진하기 위해 청정개발체제(CDM)에서

새로운 참여방식이 필요"하여 "온실가스 감축 의무를 지니지 않는 개도국간의 CDM에도 감축분을 인정해주는 유연한 체제가 필요"함을 주장하였다.

현재 unilateral CDM은 중남미의 10여 국가들과 일본이 지지를 보내고는 있지만, 국제사회에서 아직은 소수파적 입장이다. 더욱이 unilateral CDM은 교토의정서의 기본 합의 조항에 포함되어 있지도 않다. 하지만 기후변화 협약의 구체적 시행 과정에는 여러 국가의 이해관계가 복잡하게 얹혀 있어서 협약 내용의 계속적인 개정과 변화가 발생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할 때, unilateral CDM의 관철을 위한 노력은 계속적으로 수행되어야 할 것이다. 더불어 unilateral CDM과 같이 우리나라의 입장에서 교토메카니즘을 긍정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방식의 관철 문제를 의무감축 일정 이행 문제와 연관시켜 제기할 필요도 있다.

예컨대, 향후 의무감축 이행이 불가피해질 경우 unilateral CDM의 허용을 하나의 조건으로 제시할 수도 있을 것이다.

### 3) 국내 정책

제2차 공약기간부터 우리나라가 의무감축을 하진 아니면 우리나라가 원하고 있는 제3차 공약기간부터 의무감축을 시행하건, 결국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정부의 정책과 기업의 행동을 불가피하다. 이러한 맥락에서 특히 관심의 대상이 되고 있는 것이 자발적 협약, 배출권 거래, 탄소세 등이다.

온실가스 배출량은 에너지 소비량과 밀접한 상관관계를 가지고 있다. 따라서 온실가스 배출량을 감축하기 위한 중요한 수단 중의 하나가 에너지 이용 효율의 향상이다. 에너지 이용 효율 향상을 위한 정책 중에서 산업계와 직접 관련되는 것이 자발적 협약(Voluntary Agreement)과 ESCO 사업이다. 특히 자발적 협약은 국내 산업계도 적

극적으로 동참하려고 하고 있다.

실제로 1999년부터 본격적으로 시작된 자발적 협약은 2000년도까지 212개 사업장이 참여하였으며, 앞으로 더 확대될 예정이다. 자발적 협약에 참가한 사업장 중 46개 사업장에 대한 평가 결과, 공정개선, 폐열 회수, 고효율시설 개체 등으로 총 775 천TOE의 에너지(산업부문 에너지의 약 1%)를 절약한 것으로 평가되었으며, 이산화탄소 배출량도 1997년 대비 7.8% 감소한 것으로 평가되었다.

대한상의 산업계 기후변화협약 대책반은 기후변화협약에 대한 산업계의 기본 입장에서, 지구온난화 현상이 초래할 가능성이 있는 범지구적 피해를 막기 위해 온실가스 배출을 저감해야 할 필요성에 인식을 같이하며, 이와 같은 환경적 요인 이외에도 비용절감을 통한 국제경쟁력 제고를 위해 에너지 소비를 감축해야 할 필요성을 깨닫고 향후 정부, 소비자, NGO 등 각계와의 동반자적 협력관계를 강화하면서 온실가스 배출 감축을 위한 자발적 노력을 배가할 것이라고 천명하였다.

에너지 절약은 산업계의 비용절감을 위한 매우 중요한 요소이다. 정부는 산업계의 자발적인 에너지 절약 노력이 비용 효과적인 온실가스 저감 방법 중의 하나임을 인식하고 적극적인 지원을 할 필요가 있다.

배출권 거래는 온실가스 저감비용을 절감할 수 있는 하나의 방식이다. 세계적 차원에서 보면, 온실가스 저감의 한계비용이 높은 나라와 낮은 나라가 온실가스 배출권을 거래함으로써 배출권 거래를 하지 않는 경우에 비해 상호 이익이 되는 방식으로 온실가스를 감축할 수 있게 된다. 이는 일국 차원에서도 마찬가지이다. 온실가스 저감의 한계비용이 높은 기업과 낮은 기업이 시장에서의 배출권의 거래를 통해 각 기업이 비용효과적으로 온실가스를 저감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국가 전체적으로도 온실가스 저감 비용을 줄일 수 있다. 따라서 산업계에서는 배출권 거래의 국내 도입을 적극적으로 지지하고 있다.

현재 정부는 배출권 거래제의 시범적 운용을 모색하고 있

다. 배출권 거래가 정착되기 위해서는 필요한 통계자료의 정확한 구축과 더불어 여러 가지 법적·제도적 장치들이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배출권 거래와 관련해서는 배출권의 소유권 부여 문제, credit의 인정 및 활용 문제 등과 같이 이해관계가 얹혀 있는 문제들이 내재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나라의 의무감축 시기가 가까이 다가오고 있는 상황에서 배출권 거래의 정착을 위한 준비를 서둘러야 할 것이다. 더불어 시장기구를 활용하여 온실가스를 저감할 수 있는 그 외의 정책수단들을 찾아내려는 노력이 필요할 것이다.

탄소세는 에너지원별로 함유되어 있는 탄소량에 비례하여 부과되는 일종의 물품세(excise tax)이다. 탄소세가 도입될 경우 탄소를 많이 함유하고 있는 에너지의 사용에 부정적인 경제유인이 제공되므로 일정한 대체효과가 발생하게 된다. 즉, 석탄이나 석유 같은 高탄소 에너지에는 높은 세액이, 가스와 같은 低탄소 에너지에는 낮은 세금이 부과되고 탄소를 전혀 함유하고 있지 않은 수력이나 원자력에는 세금이 부과되지 않음으로써, 高탄소 에너지의 사용량을 줄이는 효과를 가진다.

현재 일부 유럽 국가들을 중심으로 탄소세를 도입하여 시행하고 있다. 향후 지구온난화 현상이 가속화되고 이에 대한 과학적인 증거가 더욱 확실해질 경우 선진국간의 합의에 의해 탄소세의 도입이 가속화될 가능성이 높다. 탄소세의 실시에 따른 경쟁력 저하 문제는 주요 교역 상대국이 동시에 실시하게 되면 어느 정도 해결될 수 있기 때문에, 선진국간 합의만 이루어진다면 탄소세의 도입은 급속히 확산될 수 있다.

최근 우리나라도 탄소세의 도입을 신중하게 검토하고 있다. 기후변화협약의 진전에 따라 탄소세의 실시 여부가 무역규제와 관련될 수 있기 때문에, 탄소세 도입에 대한 논의가 필요한 것은 사실이다. 일반적으로 탄소세의 도입은 GNP의 감소와 생산비용 상승을 초래한다. 탄소세 도입이 미치는 영향의 크기는 각 국의 산업구조 및 에너지투입

구조에 따라 크게 달라지며, 특히 탄소세 도입에 따른 각국의 생산가격의 변화는 대외경쟁력의 변화를 의미한다. 에너지 다소비형 산업구조를 가진 우리나라는 다른 선진국에 비하여 탄소세에 의한 산업부문별 생산가격 상승효과가 상대적으로 클 것으로 예상된다. 따라서 선진국과 같이 탄소세를 도입한다고 하더라도, 선진국의 수입품 시장에서 선진국 제품에 비해 우리나라 제품의 상대가격이 상승하게 될 것이고 이로 인해 국제수지에 부정적인 효과를 낳을 수 있다.

요컨대, 탄소세의 도입은 국내 산업구조의 변화를 초래할 뿐만 아니라 대외경쟁력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탄소세 도입 문제는 온실가스 감축이라는 측면만이 아니라 여타 경제적 측면들을 고려하여 신중하게 대처해야 할 것이다.

#### 4. 結

기후변화협약은 단순한 또 하나의 환경관련 국제협약이 아니다. 금융세계화의 흐름에 대한 무지와 잘못된 국내정책이 1997년의 금융위기를 초래하였듯이, 준비되지 않은 채 기후변화협약의 국제적 협상 테이블에 뛰어든다면 또 다른 국가적 위기가 초래될 수 있다.

기후변화협약은 우리 경제가 또 한 번의 도약을 하느냐 아니면 후진국의 대열로 밀려나느냐 하는 폐국가적인 사

활을 겪 문제가 될 수 있다. 따라서 기후변화협약은 에너지산업만의 문제도, 산업계만의 문제도, 정부만의 문제도 아니며, 우리나라 전체의 운명과 관련되는 폐국민적인 문제이다.

이러한 점에 대한 국민들의 인식 제고를 위해 정부와 산업체 모두 적극적으로 노력할 필요가 있다.

그동안 우리나라는 기후변화협약의 거대한 소용돌이에 대해 다소간 안이하게 대처해 왔다. 우리나라의 산업계 역시 기후변화협약과 관련된 세계의 움직임에 비해 상대적으로 방어적인 자세로 대처해 온 것이 사실이다. 기후변화협약은 우리에게 위기일 수 있지만, 다른 한편으로 본다면 이러한 위기는 새로운 도약을 위한 기회가 될 수 있다. 다만, 기회는 준비된 자에게만 유의미한 결과를 가져다준다는 점을 명심해야 할 것이다. 특히 정부는 기후변화협약과 관련된 입장 및 정책을 독단적으로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산업체와 공동으로 국가적 사안인 기후변화협약에 대처할 수 있는 전략을 모색하는 자세가 절실히 요청된다.

본고는 지난 11월 「기후변화협약·대책세미나」에서 발표된 자료입니다.

